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0. 6. 남해석 의원 외 6명
- 나. 회부일자: 2023. 10. 10.
- 다. 상정일자: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10. 1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남해석 의원】

가. 제안이유

「예산회계법」 폐지에 따른 조문 내 관계법령 수정 및 조례 전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의 개정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안 제3조제3호)
 - 「예산회계법」의 폐지에 따라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을 금지하도록 관계법령을 수정

○ 전반적인 조문 정비(안 제1조~제1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2023. 6. 7. ~ 6. 12.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남해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예산회계법」 폐지에 따른 조문 내 관계법령 수정 및 조례 전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항별 검토

가. 제명의 변경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 내용임.

나. 안 제3조제3호 수정내용

「예산회계법」 폐지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근거를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관련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

된 업무로 수행하는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제3호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임.

다. 조례 전체를 정비하는 내용

현행 조례는 전반적으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정확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당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법제처)”에 따라 “해당”으로 수정하거나 무엇을 지시하는지 명확하게 기입하는 등 최근 개정 추세를 반영한 내용임.

○ 종합 검토의견

가. 상위법령의 변경으로 수정하고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최근 개정 추세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내용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다만,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안 개정은 해당되는 부서와 매년 자치법규 정비를 총괄하는 법무팀에서 제때 수정 및 현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